

제258회 임시회

2007. 3. 26(월)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충청북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민경환, 이대원, 최미애, 박영웅, 임현, 이범윤
박재국, 이연구, 강태원, 조영재, 장주식,
박종갑, 이영복 (민경환 의원 대표발의)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07년 2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3. 제안이유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금 수혜대상에서 그 필요성이 없어진 중학생을 제외하는 대신에 대학생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장학생 수혜대상자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함
(안 제1조)

나.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함
(안 제3조)

다. 장학생 선정 시 보고체계를 “2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회장”에서 “30일 이내에 도지사”로 함(안 제5조)

라. 장학생의 정원을 시·군당 새마을지도자수의 “7%”에서 “5퍼센트”로 축소 조정함(안 제6조)

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정함(안 제7조)

5. 검토의견

가. 개정이유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시행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이 축소되어 조례의 실효성이 반감된 문제점과 기타 운영상 나타난 오류를 개선하여 새마을장학금 지급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나. 종합의견

장학생 수혜대상자에 대학생 추가(안 제1조)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등이 예상되나,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확대하여 조례의 제정취지와 그 실효성을 증대하는 것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부합하는 것이라 여겨짐
기타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음